

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지소 등의 운영 및  
주민건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 
(보건소 의약과 소관)



**행정재경위원회**  
전문위원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지소 등의 운영 및 주민건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48호
- 나.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5. 31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5. 31.

## 2. 제안이유

수요자 중심의 보건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지소 등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과 건강증진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들의 자치역량 도모를 위한 주민건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와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을 예방·관리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보건지소 등의 운영 원칙 및 업무 (안 제3조 ~ 제5조)
- 다. 주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(안 제6조 ~ 안 제8조 )
- 라. 위원의 해촉 (안 제9조)
- 마. 수당 및 표창(안 제10조 및 안 제11조)

#### 4. 관계법령

- 「지역보건법」 제11조 및 제13조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금천구 보건지소, 보건분소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지역사회 전문가와 구민에게 자문받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건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
- 주민주도 건강증진 사업의 확장 및 높아진 주민참여 요구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활동 지원을 위하여 보건지소 등을 추가하고 주민 자조모임 적극 발굴 및 지역사회 단체와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 체계 강화, 주민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교육, 주민건강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형 건강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
- 본 조례 제정안은 적합하고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## 지역보건법

[시행 2023. 3. 28.] [법률 제19305호, 2023. 3. 28., 일부개정]

**제11조(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)**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6. 2. 3., 2019. 1. 15., 2019. 12. 3.>

1.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
2.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, 조사·연구 및 평가
3. 보건의료인 및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·관리·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·관리
4.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, 학교,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
5.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·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
  - 가. 국민건강증진·구강건강·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
  - 나.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
  - 다.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·증진
  - 라. 여성·노인·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·증진
  - 마.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
  - 바.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,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
  - 사.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

아. 난임의 예방 및 관리

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1항 제5호아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12. 3.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9. 12. 3.>

**제13조(보건지소의 설치)**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(이하 “보건지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